

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7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0. 1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0. 15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9. 10. 23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정이유

가. 새마을운동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신 국민정신 운동으로 승화시켜 “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”로 확산하고

나. “근면, 자조, 협동”의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 운동 조직을 육성해 나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3조)

-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
-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
-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
-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
- 기타 우수회원 표창,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702호(2009. 8. 27 ~ 2009. 9. 16.)

- 제출의견 : 없음

나. 관계법령 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

다. 합 의 : 관련실과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」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, 고성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고성군협의회, 고성군새마을부녀회 등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하겠음.
- 고성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단체 등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「지방재정법」, 「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」, 「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」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 없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다른 단체에서 유사 혹은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안전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

- 문 : 새마을운동 단체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단체이며 새마을지도자는 주민 총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로 근면, 자조, 협동정신으로 솔선수범하고 있는데,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른 단체에서 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요구가 있거나 대중화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
- 답 :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, 일단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문 :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이미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?
- 답 : 예,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문 :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?
- 답 : 예, 맞습니다.

- 문 : 지방재정법이나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우수회원 표창이나 사기진작 이런 것은 하고 새마을 봉사활동 시 재해, 사망 이런 것은 안하고 있지요?
- 답 : 예, 새마을 회원이 720명 넘는데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람에게 새마을 회원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.
- 문 : 새마을 간판만 있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하면 안 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도 규칙 제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과 사기진작을 해 주는 만큼 우리군도 요구해야 될 사항이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.
- 답 : 알겠습니다.
- 문 : 조례가 5조 밖에 안데는 이 조례안을 갖고도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?
- 답 : 재해나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정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,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...
- 문 : 봉사활동 중 재해, 사망은 빈도가 잦지는 않지요?
- 답 :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런 단체의 재해나 사망에 대한 보험 가입도 같이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도 같은 시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.
- 문 : 시군 조례제정 현황은?
- 답 : 제정이 된 곳은 거창, 함천, 함안, 남해이고 준비 중인 곳은 창녕, 하동, 함양이며, 의령은 내부 사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청은 지난 5월 부결된 것으로....
- 문 : 새마을 재산(건물) 소유형태와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?
- 답 : 새마을 건물은 등기가 새마을로 되어 있고 부채는 약 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
- 문 : 부채가 2억 5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누가 부담하는지?
- 답 : 지회장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 부담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.

- 문 : 조례제정으로 우리 군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?
- 답 :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.
- 문 : 이 조례제정으로 추가부담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?
- 답 :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, 새마을 회원의 재해 중 사망이나 이런데 대비한 보험가입 문제는 전체 700여명의 새마을 회원 전부 보험 가입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른 시군 예도 봐 가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...
- 문 : 다음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좀 잘 제정해서 앞으로 시비 거리가 안 생기고 새마을 운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답 : 알겠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10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